연말정산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연말 · 연초에 집중되는 결산업무 등으로 인하여 회계 · 총무부서에서는 일정시한(보통 12월말, 늦어도 1월초)을 정하여 소득공제 등 연말정산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청하게 된다.

평소에 의료비 영수증 등을 잘 챙겨두었던 봉급생활자들은 제 때에 제출할 수 있겠지만, 미리 준비를 하지 못한 근로자의 경우 영수증 일부를 누락하거나 공제대상자를 포함시키지 못한 채 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한 후 나중에 발견하는 경우를 종종 접하게 된다.

이처럼 연말정산을 하면서 마땅히 공제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락한 경우, 구제받을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해보고자 한다.

1. 연말정산 기한 이전에 누락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2006년 귀속 근로소득의 연말정산 시기는 '2007년 1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때까지' 이므로 누락된 것을 발견한 날이 1월분 급여지급일 이전이라면 지금이라도 관련부서에 누락된 영수증이나 공제사항을 수정한 신고서를 제출하기 바란다(소득세법 제137조 제1항). 참고로, 회사가 과세관청에게 연말정산 세액을 납부하는 실제 기한은 2월 10일(토요일이므로 2월 12일)이므로 이때까지라도 수정사항이 발견될 경우 관련부서에서 도와준다면 수정할 수 있다(소득세법 제128조).

2. 연말정산 기한 이후에 누락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 2007년 5월말 이전에 발견한 경우

근로자가 연말정산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나면, 회사는 2006년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소득할 주민세 포함)에 대한 정산액(환급액 또는 추가 납부액)을 반영한 1월분 급여를 지급하고, 2007년 2월말까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각 근로자에게 발급한다.

만약 근로자가 동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꼼꼼하게 살피다가 계산상 오류가 있거나 공제대상의 누락 또는 뒤늦게 발견된 의료비 영수증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럴 때는 2007년 5월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에 연말정산시 빠뜨린 소득공제서류를 소

득세신고서(소득세법 별지 제40호 서식)와 함께 본인의 주소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이에 해당하는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다.

요컨대, 5월말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세무사에게 수수료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러한 절차적·시간적 비용을 부담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연말정산을 미리 꼼꼼하게 준비하여야 할 것이다.

■ 2007년 5월말 이후에 발견한 경우

상기 (1)에서 언급한 것처럼 연말정산을 제 때에 하고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까지 검토하였으나 별 문제가 없어 한 동안 지내다가, 종합소득 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서야 비로서 착오를 발견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제도를 이용하면 과다 납부한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2006년 귀속근로소득에 대한 경정청구를 할 수 있으려면 당해 근로자의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2007년 2월 10일(토요일이므로 2월 12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연말정산세액을 신고납부하고 2월말까지 지급조서를 제출하였어야 한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4항).